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665-10



www.mohw.go.kr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노령층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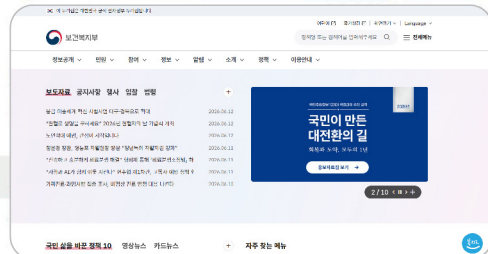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www.ss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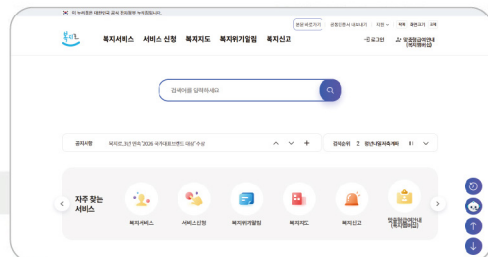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ww.mohw.go.kr



www.bokjiro.go.kr



본 책의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목차



노령층

생활지원

01 기초연금제도	6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7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9
04 노후준비서비스	10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11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13

주거

07 주택연금제도	14
0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5
09 행복주택 공급	16
10 에너지바우처	18

건강·의료

11 국가건강검진제도	19
1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21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22
1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23
15 노인 틀니 지원	24
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25
17 통합건강증진사업	26
18 65세 이상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27
1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28
20 치매검진 지원	29
2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0

고용·일자리

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1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2
24	중장년 경력지원제	33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34

돌봄

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5
27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36
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7
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38
30	온가족보듬사업	40

법률·사회참여

31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41
32	법률구조 제도	42
33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44
34	디지털배움터	45
35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46



기초연금제도

| 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	월 최대 34만 9,700원	월 최대 55만 9,520원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만 65세 미만 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5년) 112만 원 → ('26년) 116만 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만 3,179원, 4인 기준 487만 1,054원)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56만 4,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49만 4,000원 이하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지 원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99만 4,600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부 가 지 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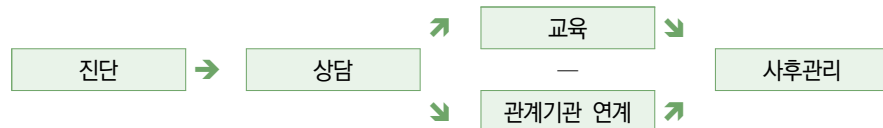
- |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 방법 수급자 본인이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앱 신청
-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노후준비서비스

|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진단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상담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주제별 맞춤형 강의
관계기관 연계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사후관리	상담 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 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 방법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및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table><tr><th>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r><tr><td>소득</td><td colspan="3">360만 원 이하</td></tr><tr><td>재산</td><td>6,000만 원 이하</td><td>9,000만 원 이하</td><td>1억 3,500만 원 이하</td></tr><tr><td>경감률</td><td>30%</td><td>20%</td><td>10%</td></tr></tabl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이하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이하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로 신청,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또는 한국전력(☎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은퇴금융 아카데미

- |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 |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상속, 증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방법 :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은퇴금융] 채널
- 교육과정 : 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



주택연금제도

| 대상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가입자

|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68천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3천 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6년 3월 1일 기준)
------	---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으로 사용 가능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 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임대임대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든든전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관

※ 2026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408만 4,215원, 70% 571만 7,900원, 90% 735만 1,586원, 100% 816만 8,429원, 120% 980만 2,115원

|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3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든든전세	시세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임대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든든전세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0,8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는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다자녀가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61.12.31. 이전 출생자	2019.1.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지원제외

-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②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내용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6월~12월)

※ 바우처 사용 : (하절기) 7월~9월, (동절기) 10월~차년도 5월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I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 <table><tr><th>구분</th><th>(1차) 생후 14~35일</th><th>(2차) 4~6 개월</th><th>(3차) 9~12 개월</th><th>(4차) 18~24 개월</th><th>(5차) 30~36 개월</th><th>(6차) 42~48 개월</th><th>(7차) 54~60 개월</th><th>(8차) 66~71 개월</th></tr><tr><td>건강 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구강 검진</td><td>-</td><td>-</td><td>-</td><td>○ (18~29)</td><td>○ (30~41)</td><td>○ (42~53)</td><td>○ (54~65)</td><td>-</td></tr></table>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	구강 검진	-	-	-	○ (18~29)	○ (30~41)	○ (42~53)	○ (54~65)	-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																												
구강 검진	-	-	-	○ (18~29)	○ (30~41)	○ (42~53)	○ (54~65)	-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건강+구강검진) - 초등학교 2·3·5·6학년생 매년 구강검진 실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내용

구분	목표질환		
일반 건강검진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C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40세
	C형간염		56세
	폐기능검사		56세, 66세(생애2회)
	골밀도검사		54, 60,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조기정신증	20~34세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암검진	• 위암 :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1단계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시,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사후 결과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평등가족부)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 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 검진	• 1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주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 |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자주 하는 질문

65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참여 지역마다 지원 연령 및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사업 지역의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10%	20%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 |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5% | 15% |
-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합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통합건강증진사업

| 대상 지역 주민

|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 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예방(절주)
- 영양
- 구강보건
- 한의약 건강증진
- 여성어린이특화
- 방문 건강관리
- 신체활동
- 비만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금연
- 모바일 헬스케어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5세 이상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65세 이상 성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내용

구분	지원 백신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무료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3가 백신(IIV)	매년 1회 무료접종 ※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10월경 시작

| 방법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

※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치매검진 지원

- |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 |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수도권 9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 지원
- | **방법**
 - 신청방법 :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25년) 분기별 90만 원 지원 → (26년) 분기별 수도권 9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I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I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I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I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 | 대상**
 - 만 50세~65세 대한민국 국적 미취업자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내용**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함 (1주 30시간 이상 참여자 기준, 월 최대 150만원 지원)
- | 방법**
 1. 민간위탁기관(중장년내일센터 등)에 신청서 제출
 2. 고용24 신청(고용24 >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중장년경력지원제)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알려드립니다

- 최소 4주~최대 12주 과정 참여 가능
-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1주 30시간 이상 참여자 기준, 월 최대 150만원(4주 정산시) 지원

?» 자주 하는 질문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단, '26.1.1. 이후 참여자만 가능, 근로계약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능)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 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3년 이내 (예비)창업자
- | 내용**
 -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 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특화지원,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 방문, AI·디지털 안부확인
		생활안전 서비스	생활안전점검·관리
		말벗 서비스	지지·격려·공감
	사회참여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재난대응, 보건·복지, 기타생활 정보제공
		사회참여 활동	사회관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기타사회참여 활동
	생활교육 지원	자조모임 활동	자조모임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신체영역 활동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프로그램
	특화지원	정신영역 활동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퇴원환자 단기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활동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치료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일상회복 패키지)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지원연계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기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4만 450원 지급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건강 25시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자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7 → 1)

»» 알려드립니다

QR코드로 전국 지역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온가족보듬사업

| 대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내용 •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 위한 상담 제공
사례관리	초기상담 및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계획 수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손)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습정서지원 - (손)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 청소년(한)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 원가정 회복지원,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 긴급돌봄지원(생활도움서비스 지원 및 1인가구 병원동행)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등

| 방법 시·군·구 가족센터에 신청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1577-4206)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 방법**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 |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법률구조 제도

- |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811만 8,423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74만 2,107원) 이하 농·어업인

- | 내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무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범죄피해자(신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양육, 인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국내거주 외국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사기피해자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예술인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전시납북자가족		
	영세담배소매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가상자산피해자		
	차상위계층		
	집단피해자 등 공익소송		
	플랫폼종사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24세 이하)		
	HD현대희망재단의 지원을 받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소상공인		
소득기준 예외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무료	(무료-실비부담가능)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 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
- | 내용**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 방법** 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 안심센터에 상담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주 하는 질문

1.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
2.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르신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공단이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배분계획에 근거한 재산을 월별 배정,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 등 재산관리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재산 집행은 계약에 의해 지정된 지원인이 하고, 사망 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범사업에 이용하시면 이용료는 무료
* 다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닐 경우 이용료 부과



디지털배움터

- | 대상 AI·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 | 내용 AI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생성형 AI 교육까지 AI·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 무료 제공
- | 방법 AI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1800-0096) 신청
- | 문의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디지털배움터(☎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 대상 60세 이상 국민

| 내용 취약 지역에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 및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취약지역: 소멸위험지역(130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 방법 취약지역 내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 매년 프로그램 개최 지역과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02-704-2467, 4338)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6년 6월 30일

디자인 덕성기획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665-10

※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